



보도 일시	<전매체> 12. 27(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대건 (044-204-7700)
		담당자	사무관 강해준 (044-204-7702)
			사무관 이광윤 (044-204-7706)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현물출자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고도화
- 향후 벤처기업법 하위법령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안내서(매뉴얼) 발간 및 제도 설명회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 명확화, 신고 의무 강화 등 제도를 고도화했다.

1 현물출자 특례대상 확대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면서 저작권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하게 돼 벤처기업의 원활한 현금 조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고도화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부여 대상, 부여 한도, 행사가격 등에서 특례가 설정돼 있으며, 임직원을 위한 세제 혜택 또한 마련돼 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고도화되며, 변화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인력 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부여 대상에 따른 특례 설정을 위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차등을 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 이후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는 부여 한도, 행사가격, 행사요건 등에서 차등이 있다.
- 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 ③ 벤처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적용시 「상법」보다 「벤처기업법」이 우선하므로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법을 준수해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이사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참고)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차등화>

구분	현행	개정
발행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50%	· 임직원 : 현행과 동일 · 외부 전문가 : 발행주식총수의 10%
행사 가격	· 신주발행 :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단 일정 요건 하에 시가 미만 권면액 이상 부여 가능 특례) · 자기주식 등 : 시가 이상	· 임직원 : 현행과 동일 · 외부 전문가 : 특례 없음
행사 요건	·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 임직원 : 현행과 동일 · 외부 전문가 : 결의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벤처기업 과의 계약 사항을 완료하는 등 요건 충족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3고 복합위기 상황에서 벤처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벤처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자금 조달 및 인재 유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2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책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개정안
<p>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p> <p>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치를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p> <p>① ----- ----- 디자인권·저작권----- ----- -----지식재산권등----- -----.</p> <p>② ----- -----지식재산권등----- ----- ----- -----.</p>
<p>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p> <p>① (생략)</p> <p>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산업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지식재산권등----- -----. ----- ----- -----.</p>

③ (생략)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산업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제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제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식재산권등-----
-----.

③ (현행과 같음)

④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

-----.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

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
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
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
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
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
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
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
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
용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
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
의 종류와 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
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
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
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
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

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

	<p><u>용한다.</u></p> <p><u>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u></p> <p><u>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생략)</u></p>	<p><u>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현행 제16조의4와 같음)</u></p>
<p><u>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생략)</u></p>	<p><u>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현행 제16조의5와 같음)</u></p>
<p><u>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생략)</u></p>	<p><u>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현행 제16조의7과 같음)</u></p>
<p><u>제16조의8(소셜벤처기업) (생략)</u></p>	<p><u>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현행 제16조의8과 같음)</u></p>
<p><u>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u></p>	<p><u>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u> -----</p>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
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등
의 출자 행위
 2. ~ 4. (생략)
 5.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을 50
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 ② (생략)

-----.

1. -----지식재산권등-----

 2.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6. 제16조의8-----

- ② (현행과 같음)